

#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 1. 총칙

가. 이 가이드스는 ESG 평가기관과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가이드스에서 같다.)이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SG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며 정보이용자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ESG 평가(ESG Ratings)란 기업 등의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노출 또는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 점수, 순위(이하 '평가등급'이라고 한다.) 등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 이 가이드스는 ESG 평가서비스, 평가등급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ESG 평가기관"이라 한다.) 및 그 임직원에 적용한다. 계약에 의하여 ESG 평가기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등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ESG 평가기관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ESG 평가기관은 수탁기관에 가이드스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이 가이드스는 그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가이드스의 수용과 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한 ESG 평가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참여 ESG 평가기관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참여 ESG 평가기관은 사업모델 등을 고려하여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해서 미이행 사유와 대안을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2. 내부통제체제 구축

가. ESG 평가기관은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특히 중요한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등의 우려를 식별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부통제 정책을 별도로 명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나. ESG 평가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준법감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다.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및 일관성을 최대한 담보해야 한다.

## 3.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가. ESG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 등급을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추정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추정의 기본 방법론을 공개한다. ESG 평가기관은 원천데이터의 범위, 수집 방법 등을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ESG 평가기관 및 임직원은 ESG 평가를 목적으로 비공개로 제공 받은 정보를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임직원은 평가대상기업의 비공개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 등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공개정보의 사용,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에 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문서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 4. 평가체계 공개

가. ESG 평가기관은 정보이용자 등이 평가등급 혹은 평가 관련 데이터의 유용성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ESG 평가방법론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평가방법론은 원천데이터의 수집, 평가지표, 가중치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방법론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변경사항을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ESG 평가기관은 기업별 평가등급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아래 라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평가결과 공개시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평가등급별 정의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ESG 평가기관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정보 공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라.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평가결과 등 가공 데이터와 자료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식재산기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평가방법론, 평가결과 등을 공개한다.

## 5. 이해상충 관리

가. ESG 평가기관 및 그 임직원은 ESG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 및 그 임직원은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관계, 절차 등을 회피하고 관련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ESG 평가기관은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컨설팅, 자문 등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 인해 ESG 평가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인력으로부터 ESG 평가업무 및 ESG 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다.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열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업무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라. ESG 평가기관은 해당기관과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ESG 평가에 있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 6.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가. ESG 평가기관과 그 임직원은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행위는 특정 등급의 부여를 조건으로 평가대상기업에 ESG 평가기관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ESG 평가기관은 평가등급을 확정하기 전에 평가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범위, 내용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통보하여 평가와 관련한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업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ESG 평가기관과 그 임직원은 ESG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업 등에 일반적인 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